#### KOSHA Guide

#### C - 14 - 2012

- (하)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거)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# (3)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

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가) 작업개요
- (나)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
- (다) 산소농도측정 유무
- (라)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
- (마) 환기설비 설치 유무
- (바) 연락설비 구비 유무
- (사)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
- (아) 방폭용 전기기계·기구의 사용 유무
- (자) 소화기 비치 유무
- (차)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
- (카)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
- (타) 조명 설치 계획
- (파) 안전교육 실시
- (하) 안전통로 확보

## 4.2. 작업 중 안전절차

# (1) 일반사항

- (가)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 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 기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(나)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% 이상 23.5%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